

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# 가. 품명

- aramcoPRIMA 500 윤활기유(Super-96)

### 나. 제품의 권고용도

- 원료 및 중간체 (Lubricating Oil Base Stock)

### 다. 제조자/공급자유통업자 정보

#### •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S-OIL(주) 온산 공장
- 주 소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
- 담당부서 : 정유/윤활공정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담당자 : 윤활공정 담당자
- 전화번호 : 052) 231-3714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FAX 번호 : 052) 231-2209

#### • 공급업자/유통업자 정보 : ( 상 동 )

#### • 작성부서 : 정유/윤활공정팀

## 2. 유해성·위험성

###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해당 사항 없음

### 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
#### • 그림문자

- 해당 사항 없음.

#### • 신호어

- 해당 사항 없음.

#### • 유해·위험문구

- 해당 사항 없음.

#### • 예방조치문구

##### 예방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##### 대응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##### 저장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폐기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(예. 분진폭발 위험성)

- 자료 없음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 번호	함유량(%)
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 (석유)		64742-54-7	100%

4. 응급조치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15 분 동안 다량의 물로 깨끗이 씻어낼 것.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제거한 후 비눗물로 노출 부위를 씻어낼 것

다. 흡입했을 때

- 신선한 곳으로 즉시 옮길 것.
- 호흡이 멎었을 경우 인공호흡 및 필요할 경우 산소를 공급할 것.
-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.

라. 먹었을 때

-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.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자료 없음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부적절한) 소화제

- 포말 소화제, CO<sub>2</sub>, Dry Chemical (고체 화공약품), 물 분무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- CO, CO<sub>2</sub>

**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**

- 밀폐된 화재 장소에 들어갈 경우 산소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기구를 착용할 것
- 과열된 용기는 물로 식힐 것

**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**

**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**

- 점화원을 차단하고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누출을 중지시킬 것
- 위험지역에서는 흡연, 불꽃 및 불을 금지할 것
-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 시키고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제한할 것

**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**

- 제품이 토양이나 수원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
-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폐기를 위해 유출지역보다 넓게 둔덕을 쌓아둘 것

**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**

-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폐기를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

**7. 취급 및 저장방법**

**가. 안전취급요령**

- 열 및 습기를 피할 것

**나. 안전한 저장방법**

- 용기는 확실하게 밀폐시켜두고 처음 들어온 저장용기에 계속 저장할 것

**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**

**가. 화학물질의 누출기준, 생물학적 누출기준 등**

- 자료 없음

**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**

- 작업장 전체 환기 및 국소 배기시설 설치할 것

**다. 개인보호구**

- **호흡기 보호**

- 정상 사용 환경하에서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 없으나 먼지발생, 가능성이 높은 환경하에서 사용할 경우 산소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호흡기구를 착용, 유기물 정화 장치를 갖춘 전면 부착용 호흡기구를 착용
- **눈 보호**
  - 보호안경을 착용함.
- **손 보호**
  - 화공약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갑(예: 고무장갑)을 착용함.
- **신체 보호**
  - 손 보호 시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

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- 가. 외관 : 투명한 액체
- 나. 냄새 : 탄화수소 냄새
- 다. 냄새역치 : 자료 없음
- 라. pH : 자료 없음
- 마. 녹는점/ 어는점 : 자료 없음
-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자료 없음
- 사. 인화점 : 232 °C 이상 (ASTM D92)
- 아. 증발속도 : 자료 없음
- 자. 인화성(고체/기체) : 해당 없음
- 차.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/하한 : 0.9~7.0%
- 카. 증기압 : 자료 없음
- 타. 용해도 : 녹지 않음
- 파. 증기밀도(공기=1) : 자료 없음
- 하. 비중(물=1) : 0.8~0.9
- 거. n-옥탄올/물분배계수 : 자료 없음
- 너. 자연발화온도 : 해당 없음
- 더. 분해온도 : 자료 없음
- 러. 점도 : 94.4 ~ 98.0 cst (@40°C)
- 머. 분자량 : 자료 없음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  -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,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분리됨
- 나. 피해야 할 조건
  - 열, 화기와와의 접촉을 피할 것

다. 피해야 할 물질

- 강한 산화제

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불완전 연소 시 CO 생성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자료 없음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• 급성독성

경구

- 자료 없음

경피

- 자료 없음

흡입

- 자료 없음

•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

- 자료 없음

•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

- 자료 없음

• 호흡기과민성

- 자료 없음

• 피부과민성

- 자료 없음

• 발암성

- 해당 없음

• 생식세포변이원성

- 자료 없음

- **생식독성**
  - 자료 없음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1 회 노출)**
  - 자료 없음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**
  - 자료 없음
- **흡인유해성**
  - 자료 없음
- **기타 유해성 영향**
  - 자료 없음

- 다. 독성의 수치적 척도 (급성독성 추정치 등)
- 자료 없음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- 가. 생태독성
- 자료 없음
- 나. 잔류성 및 분해성
- 자료 없음
- 다. 생물농축성
- 자료 없음
- 라. 토양이동성
- 자료 없음
- 마. 기타 유해 영향
- 자료 없음

## 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방법
- 폐기물은 승인된 산업용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할 것

**나. 폐기시 주의사항**

- 다량일 경우 적절한 연소, 소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것

**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**

---

**가. 유엔번호(UN No.)**

- 자료 없음

**나. 적정선적명**

- 자료 없음

**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**

- 자료 없음

**라. 용기등급**

- 자료 없음

**마. 해양오염물질**

- 자료 없음

**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**

- 자료 없음

**15. 법적 규제현황**

---

**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**

- 해당 없음

**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- 해당 없음

**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- 제 4 류 인화성 액체 제 4 석유류, 6000 리터

**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- 폐기 시,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

**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**

- 자료 없음

## 16. 그 밖의 참고사항

---

### 가. 자료의 출처

- S-OIL(주) 분석자료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-130 호

### 나. 최초작성일자

- 1996. 07. 01.

### 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개정횟수
  - 3 회
- 최종 개정일자
  - 2022. 07. 12

### 라. 기타

- EU 위원회는 IP 346 에 의해 측정했을 때 3% 미만의 DMSO(Dimethyl Sulfoxide)를 함유하는 물질에 대해서 발암 물질로 분류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였음.